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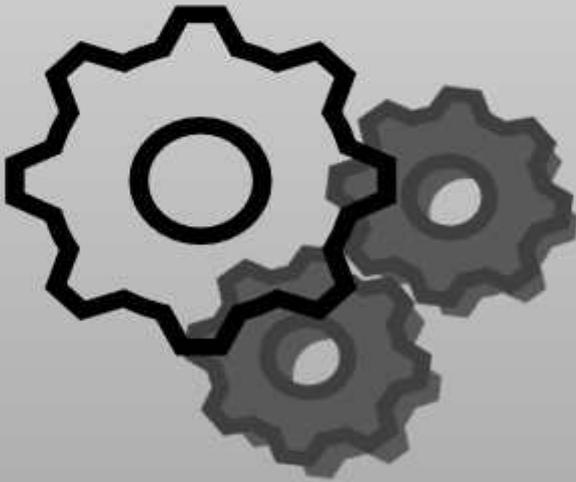
기업에게는 <sup>氣 up</sup>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근로자에게는 <sup>cheer up</sup>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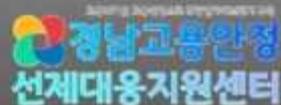
2023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경남 기업 2in1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2023. 03. 27.



경남경영자총협회  
Gyeongnam Enterprises Federation



경남고용안정  
선제대응지원센터



# contents

<b>I. 개요</b> .....	<b>1</b>
1. 목적 및 추진근거 .....	1
2. 사업기간 .....	1
<b>II.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b> .....	<b>2</b>
1.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	2
2. 지원대상 .....	2
<b>III. 지원요건</b> .....	<b>3</b>
1.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대상 요건 .....	3
2.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대상 요건 .....	4
3.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	4
4. 대상 근로자 참여요건 .....	5
5.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지역요건 .....	5
6. 대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 .....	6
7. 기타 요건 .....	6
<b>IV. 지원 제외 요건</b> .....	<b>8</b>
1.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 요건 .....	8
2.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지원 제외 요건 .....	11

**V. 지원절차** ..... 12

1. 지원 프로세스 ..... 12

2. 신청 및 절차 관련 세부 내용 ..... 13

**VI. 지도·점검 및 위반 조치** ..... 16

1. 지도 및 점검 ..... 16

2. 대상자 고용(근속)유지 의무 위반 시 조치 ..... 16

3. 부정수급 유형 ..... 16

4.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16

[참조1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제출서류 항목] ..... 17

[참조2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제출서류 항목] ..... 18

[참조3 Q&A] ..... 19

# 1. 개요

1. 목적 및 추진근거

2. 사업기간



## 1. 목적 및 추진근거

### 1-1. 목적

- ① 경남지역 주력산업의 고용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및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여 고용위기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위기산업과 신성장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고용위기 해소
- ②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의 고용서비스를 받은 구직자와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인력양성사업 교육생을 채용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1개월마다 2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3회) 경남 기업 채용 장려금을 지원, 취업한 대상 참여자에게는 2개월마다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2회)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을 지원하여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의 기회를 넓히고, 구직자에게는 취업의욕 고취와 신규 취업처에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양방향(2in1) 서비스 제공

### 1-2. 추진근거

-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③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2. 사업기간

- ☞ 2023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II.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2. 지원대상



## II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항목	<기업지원>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근로자 지원>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지원금액	1인당 600만 원	1인당 200만 원
지원한도	기업당 10명	-

※ 단, 1명의 대상자에 대해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을 1회차라도 지원받을 시 대상자가 퇴사를 하여 '지급중단'이 되더라도 지원한도 인원에 포함

### 2. 지원대상

#### 2-1.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대상

##### ① 대상기업

- 2023년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자를 채용한 경남 도내 중소·중견 기업(제조업 한정)
-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사전 모집된 기업

##### ② 대상 근로자

- 2023년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자 중 '구직자' 또는 '우선 지원 대상자'\*

\* 경남 위기산업(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퇴직자

#### 2-2.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지원대상

##### ① 대상 근로자

- 2023년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선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사업 진행 기간 중 경남 도내 기업에 취업한 자

\* 경남 위기산업(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퇴직자

#### 2-3. 모집인원

항목	우선 지원 대상자	일반 구직자	합계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280명	120명	400명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260명	-	260명

※ 1명의 대상자에 대해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기업)과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구직자)이 동시에 지급될 수 있지만 타 지원금과의 중복지원, 지원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1개의 지원금만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한 가지의 지원금만 지급될 수도 있음

※ 예산사정 상 우선 지원 대상자와 일반 구직자 중 1명 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선 지원 대상자를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III. 지원요건**

- 1.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대상 요건**
- 2.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대상 요건**
- 3. 대상 근로자 참여요건**
- 4.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지역요건**
- 5. 대상 근로자 근로조건 및 형식**
- 6. 기타 요건**



### III 지원요건

## 1.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대상 요건

### 1-1. 대상기업 자격요건

☞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업

항목	내용
기업 소재지 원칙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기업
기업 소재지 예외	본사와 지사 간 소재지가 다른데 지사로 신청할 경우 지점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경상남도이고, 고용·산재 보험이 본사와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중소·중견 제조업 기업

항목	내용
중소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며,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 직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10조원 미만이며,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 직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 자산 상한 기준 또는 매출액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견기업 해당

\* 일부 제조업 기준금액이며, 타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1-2. 대상 근로자 자격요건\_‘4. 대상 근로자 참여요건(5p)’ 참조

☞ 2023년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선 지원 대상자’ 또는 ‘구직자’

항목	정의																										
우선 지원 대상자	· 2023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중 2018년 이후 경상남도 위기산업(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경력자 · 해당 산업은 판단은 「10차 표준산업분류코드 연계표」에 의함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10px;"> <thead> <tr> <th colspan="3">정책대상</th> </tr> <tr> <th>코드</th> <th>주력산업</th> <th>신성장산업</th> </tr> </thead> <tbody> <tr> <td>C29</td> <td>기계산업</td> <td>스마트 제조산업</td> </tr> <tr> <td>C30</td> <td>자동차 산업</td> <td>미래자동차 산업</td> </tr> <tr> <td>C313</td> <td>항공산업</td> <td>첨단방위·항공산업</td> </tr> </tbody> </table> <span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span>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thead> <tr> <th colspan="3">전·후방 연관 산업</th> </tr> <tr> <th>코드</th> <th>산업명</th> <th>연관산업</th> </tr> </thead> <tbody> <tr> <td>C252</td> <td>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td> <td>첨단방위·항공 산업</td> </tr> <tr> <td>C259</td> <td>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td> <td>기계, 자동차, 항공산업</td> </tr> </tbody> </table>	정책대상			코드	주력산업	신성장산업	C29	기계산업	스마트 제조산업	C30	자동차 산업	미래자동차 산업	C313	항공산업	첨단방위·항공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코드	산업명	연관산업	C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첨단방위·항공 산업	C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정책대상																											
코드	주력산업	신성장산업																									
C29	기계산업	스마트 제조산업																									
C30	자동차 산업	미래자동차 산업																									
C313	항공산업	첨단방위·항공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코드	산업명	연관산업																									
C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첨단방위·항공 산업																									
C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일반 구직자	· 2023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해당 산업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될 시 인정 가능

## 2.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대상 요건

### 2-1. 취업기업 자격요건

☞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업

항목	내용
기업 소재지 원칙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기업
기업 소재지 예외	본사와 지사 간 소재지가 다른데 지사로 신청할 경우 지점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경상남도이고, 고용·산재 보험이 본사와 분리되어 있어야 함

### 2-2. 취업 근로자 자격요건\_‘4. 대상 근로자 참여요건(5p)’ 참조

☞ 2023년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선 지원 대상자’

항목	정의																											
우선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중 2018년 이후 경상남도 위기산업(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경력자</li> <li>· 해당 산업은 판단은 「10차 표준산업분류코드 연계표」에 의함</li> </ul>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head> <tr> <th colspan="3">정책대상</th> </tr> <tr> <th>코드</th> <th>주력산업</th> <th>신성장산업</th> </tr> </thead> <tbody> <tr> <td>C29</td> <td>기계산업</td> <td>스마트 제조산업</td> </tr> <tr> <td>C30</td> <td>자동차 산업</td> <td>미래자동차 산업</td> </tr> <tr> <td>C313</td> <td>항공산업</td> <td>첨단방위·항공산업</td> </tr> </tbody> </table> <span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span>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thead> <tr> <th colspan="3">전·후방 연관 산업</th> </tr> <tr> <th>코드</th> <th>산업명</th> <th>연관산업</th> </tr> </thead> <tbody> <tr> <td>C252</td> <td>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td> <td>첨단방위·항공 산업</td> </tr> <tr> <td>C259</td> <td>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td> <td>기계, 자동차, 항공산업</td> </tr> </tbody> </table>	정책대상			코드	주력산업	신성장산업	C29	기계산업	스마트 제조산업	C30	자동차 산업	미래자동차 산업	C313	항공산업	첨단방위·항공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코드	산업명	연관산업	C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첨단방위·항공 산업	C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정책대상																											
코드	주력산업	신성장산업																										
C29	기계산업	스마트 제조산업																										
C30	자동차 산업	미래자동차 산업																										
C313	항공산업	첨단방위·항공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코드	산업명	연관산업																										
C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첨단방위·항공 산업																										
C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p>※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해당 산업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될 시 인정 가능</p>																												

## 3.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 ☞ 신규 취업한 우선 지원 대상자의 경우 취업성공금지원 지원을, 경남 고선패 참여자를 채용한 경남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채용장려금과 취업성공금의 대상자는 100% 동일하지 않음
- ☞ 취업성공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채용장려금 대상자 중 적합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 예산 발생 시 분리 지원함

#### 4. 대상 근로자 참여요건 \_채용장려금, 취업성공금 동일

- ☞ 대상자는 2023년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임을 원칙으로 함

**<2023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구직자 참여사업 구성>**

##### 4-1. 고용서비스

운영기관	프로그램	내용
경남고용안정 선제대응지원센터 (창원, 김해, 사천)	취업지원	1:1 맞춤 컨설팅, 멘토링, 동행면접, 취업 알선,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취업 및 퇴직관련 스트레스 문제, 개인문제, 가족문제, 우울감, 적성찾기 등

##### 4-2. 인력양성사업

운영기관	참여 프로그램 항목
창원대학교	기계산업분야 재직자 전문교육
경남대학교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양성
창원대학교	수송기계 전문가 양성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특수용접 전문인력 양성
경남대학교	생산품질 기술전문가 양성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CNC 선반 실무 가공 인력 양성
한국폴리텍Ⅷ대학 창원캠퍼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IT 전문인력 양성
창원산업진흥원	내수기반 미래자동차 재직자 교육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기체 제작·정비(MRO)전문인력 양성
창원문성대학교	방위항공 전문기술 교육과정

※ 구직자 지원사업 참여문의 : 055)289-1109

#### 5.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지역요건 \_채용장려금, 취업성공금 동일

- ①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지정한 위기산업(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밀집(컨소시엄) 지역의 경력자와 채용기업을 지원함
- ② 서울특별시, 타 광역시·도 거주 구직자(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경우 취업 후 컨소시엄 지역(창원시, 김해시, 사천시)으로 전입신고했을 경우에는 인정
- ③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 신규 채용 근로자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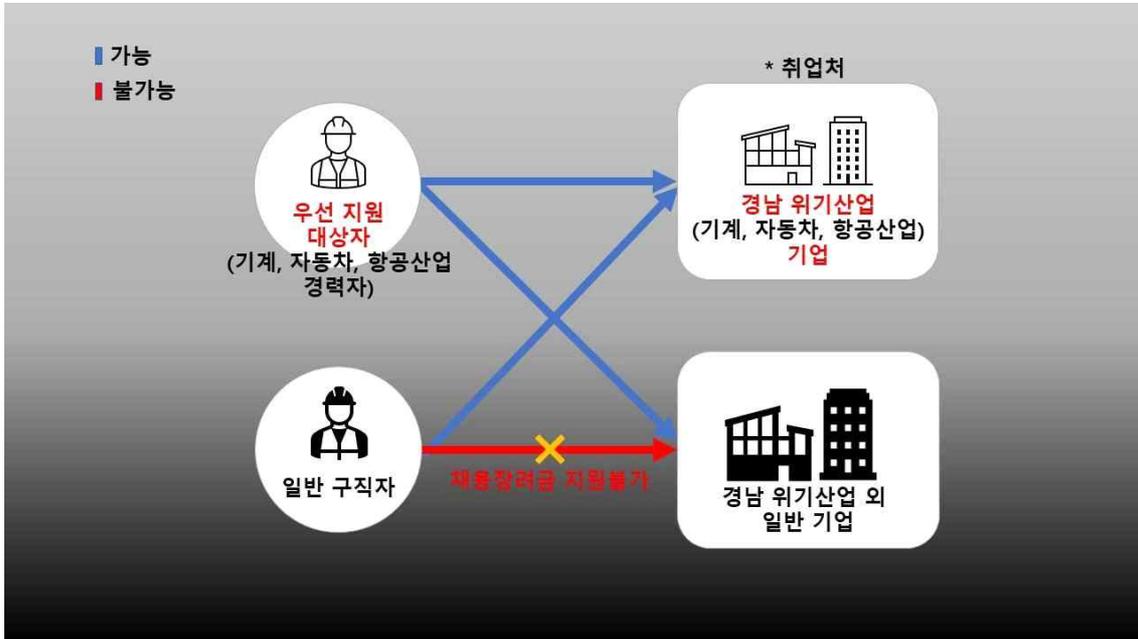
참여자 거주지	경로	참여자 취업지역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거주 구직자	⇒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소재 기업 취업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b>외 경남</b> 소재 기업 취업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b>외 경남</b> 거주 구직자	⇒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소재 기업 취업

## 6. 대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 \_채용장려금, 취업성공금 동일

항목	내용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또는 1년 이상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는 고용/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함 * 매월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업체에 대해 6개월간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함
보험가입	신규채용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근로자임금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
사업주와의 관련성 및 기타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지원 대상에서 제외함</b>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 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④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 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 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7. 기타 요건 \_채용장려금만 해당

- ① 취업처 산업요건 : 우선 지원 대상자(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경력자)의 경우 취  
업처가 경남 위기산업 기업 또는 일반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 구직자의 경우 경남 위기산업 기업으로 취업했을 경우에만 지원대상임



② 대체 채용 : 대상자 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 일자 기준으로 1달 이내에 해당 직무\*로 동일 또는 다른 대상자를 재채용했을 시 지급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원됨

\* 퇴사자와 재 채용자 간의 직무 동일성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추가 증빙해야 함



## **IV. 지원제외 요건**

- 1.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 요건**
- 2.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지원 제외 요건**



## IV 지원 제외 요건

### 1.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 요건

항목		내용										
기업 지원 제외 사항	2023년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의 기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① 2023년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중 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혜 받을 예정인 기업 ② 2023년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중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b>&lt;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기업지원사업 구성&gt;</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운영기관</th> <th>지원사업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창원산업진흥원</td> <td>고용창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위기산업 역량강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td> </tr> <tr> <td>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창원) 기계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td> </tr> <tr> <td>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김해) 자동차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td> <td>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김해) 자동차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td> <td>항공부품업체 기업지원 사업</td> </tr> </tbody> </table>	운영기관	지원사업명	창원산업진흥원	고용창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위기산업 역량강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창원) 기계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김해) 자동차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김해) 자동차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항공부품업체 기업지원 사업
	운영기관	지원사업명										
	창원산업진흥원	고용창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위기산업 역량강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창원) 기계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김해) 자동차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김해) 자동차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항공부품업체 기업지원 사업											
중복 지원 제외	① 이 사업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 ② 기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일 대상자에 대해 인건비성 지원, 채용(고용)장려금, 근무환경개선 사업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소바· 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일반유희 주점업(56211), 무도유희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 등 ②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해당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희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알리오시스템( <a href="http://www.alio.go.kr">www.alio.go.kr</a>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②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예산·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출자 기관 ③ 정부 등이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각 사립학교											

항목	내용
인건비 등 국가재정 지원 수급기업	<p>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p> <p>*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인건비)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p>
임금체불 기업	<p>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p> <p>*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a href="https://www.moel.go.kr/info/default/defaulterList.do">https://www.moel.go.kr/info/default/defaulterList.do</a></p>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체납 기업	<p>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p> <p>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p>
고용 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기업	<p>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2(지원의 제한)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p> <p>*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p> <p>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p>
중대재해 발생 기업	<p>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p> <p>* <a href="https://www.moel.go.kr/info/public/publicDataList.do?searchSeq=3308searchMasterSeq=12">https://www.moel.go.kr/info/public/publicDataList.do?searchSeq=3308searchMasterSeq=12</a></p>
고용 유지가 힘든 기업	<p>①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참여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기업</p> <p>②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워 참여자의 계속 고용이 힘든 기업</p> <p>*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p> <p>③ 국세·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참여자의 계속 고용이 힘든 기업</p> <p>④ 부당한 지시,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단기퇴사가 잦은 기업</p> <p>⑤ 사회적, 민·형사적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p> <p>* 예시) 대표자의 공금횡령, 경영진 수사재판 중 기업, 비위 사업장 언론보도 등</p> <p>⑥ ①~⑤의 사유와 기타 사유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나 사업양도가 예상 또는 진행 중으로 참여자의 계속 고용이 힘든 기업</p> <p>⑦ 기타 사유로 참여자의 계속 고용유지가 힘든 기업</p>
관련 사업주 등	<p>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제4항</p> <p>① 채용장려금 신청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p>

항목		내용
		<p>*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p> <p>② 채용장려금 신청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p> <p>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p> <p>다.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받은 사업주인 경우인 경우</p> <p>라.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p> <p>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p>
근로자 지원 제외 사항	재참여 제한	<p>'22~'23년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이력이 있는 대상자* 를 '23년 신규로 채용하여 지원받을 시에는 해당 대상자가 퇴사한 지 1년 이내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 대상자는 자발적 퇴사자에 한함</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기타 제한	<p>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p> <p>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p> <p>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p> <p>③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p> <p>④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 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p>

## 2.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지원 제외 요건

항목		내용																		
취업 기업 제외 사항	경남 기업 채용 장려금과 동일	'TV 지원 제외 요건' → '1.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 요건' → '기업지원 제외 사항(7p~)'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지원 불가 * 2023년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지원 가능																		
근 로자 지원 제외 사항	중복 지원 제외	①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근로자 대상 정부 지원사업 수혜자 ② 기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지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받은) 참여자																		
	재참여 제한	'23년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지원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23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지원받고자 할 시에는 퇴사한 지 1년 이내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전 (수급한)사업장에서 1년 이내 이직 시 퇴사유형별 정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항목</th> <th>이전 수급 직장</th> <th>(1년 이내)이직 사업장</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6개 월) 근속유지 기간 내</td> <td>자발적 퇴사</td> <td>지원금 환수</td> <td>지원불가</td> </tr> <tr> <td>비자발적 퇴사</td> <td>1회차 수급</td> <td>2회차 수급 가능</td> </tr> <tr> <td rowspan="2">(6개 월) 근속유지 기간 경과</td> <td>자발적 퇴사</td> <td>1회차 수급</td> <td>지원불가</td> </tr> <tr> <td>비자발적 퇴사</td> <td>2회차 수급</td> <td>지원불가</td> </tr> </tbody> </table> * '23년 예산소진 시 이직 사업장에서 수급 불가하며, 이직 사업장에서도 취업성공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2회차 지급이기 때문에 4개월 근속하여야 함	항목		이전 수급 직장	(1년 이내)이직 사업장	(6개 월) 근속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지원금 환수	지원불가	비자발적 퇴사	1회차 수급	2회차 수급 가능	(6개 월) 근속유지 기간 경과	자발적 퇴사	1회차 수급	지원불가	비자발적 퇴사	2회차 수급	지원불가
	항목		이전 수급 직장	(1년 이내)이직 사업장																
	(6개 월) 근속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지원금 환수	지원불가																
비자발적 퇴사		1회차 수급	2회차 수급 가능																	
(6개 월) 근속유지 기간 경과	자발적 퇴사	1회차 수급	지원불가																	
	비자발적 퇴사	2회차 수급	지원불가																	
근속 유지가 힘든 근로자	① 고등학교, 대학교(원) 재·휴학생 * 졸업예정자, 야간 대학교(원) 재학생, 방송통신 대학생 등 학업과 업무를 병행 가능한 경우는 가능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등 ③ 기타 정신·신체적 등의 사유로 장기 근로가 불가능한 자																			
기타 제한	새로 취업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입사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② 입사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입사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④ 입사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 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V. 지원절차**

- 1. 지원 프로세스**
- 2. 신청 및 절차 관련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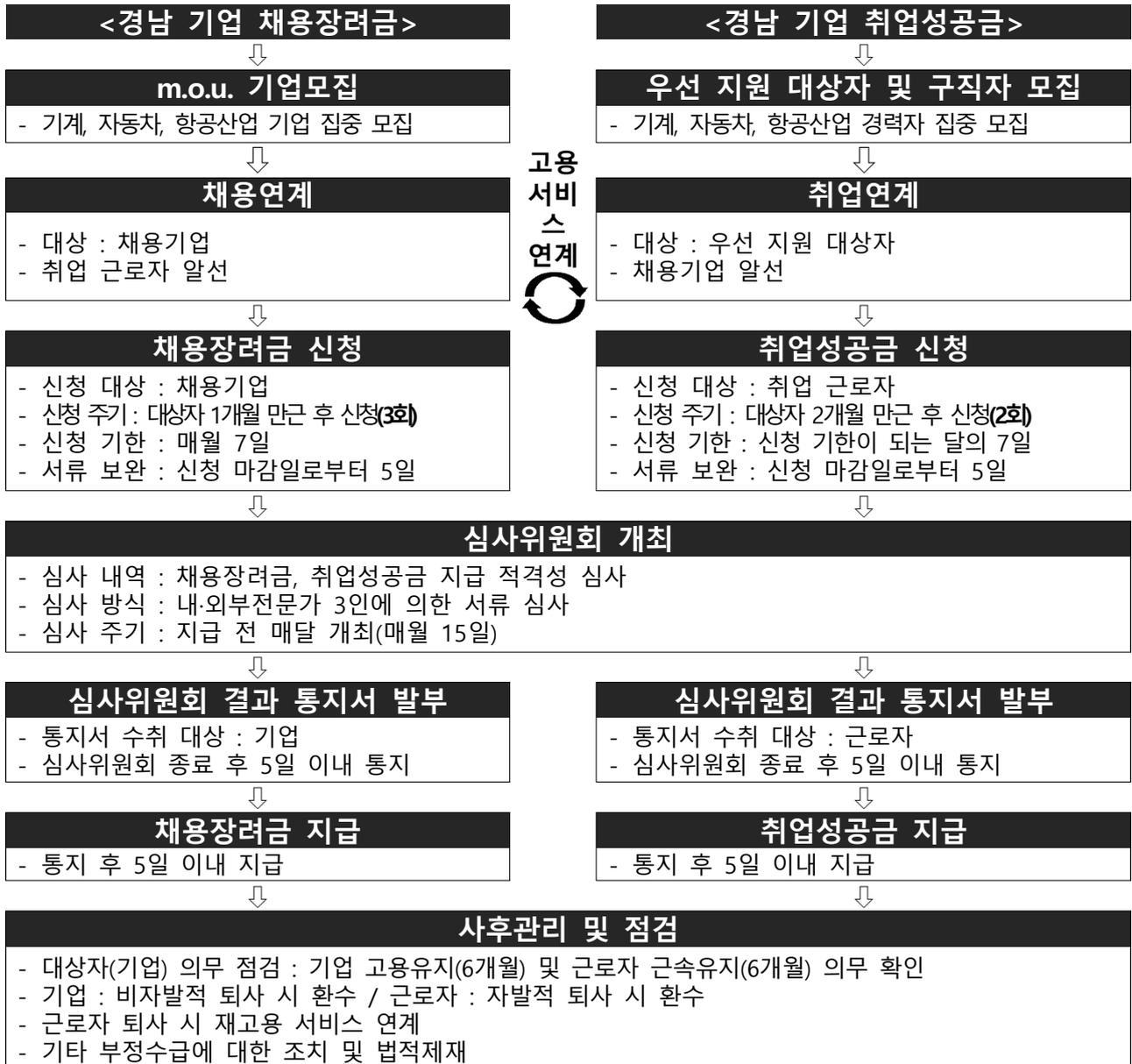


# V

## 지원절차

### 1. 지원 프로세스

- ① 사전 모집된 m.o.u 체결기업과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우선 지원 대상자 or 일반구직자)를 모집하여 채용(취업)연계 진행
- ② 채용장려금은 1개월 만근 후 3개월간(3회), 취업성공금은 2개월 만근 후 4개월간(2회) 신청(신청 달의 7일까지 신청 → 서류 보완 5일)
- ③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 근로자 지원에 대한 취업성공금 지원 전 외부전문가 3인을 구성하여 매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 적격성 검사(매월 15일)
- ④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승인이 완료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결과통지서’ 발송
- ⑤ 발송 후 지원금 5일 이내 입금
- ⑥ 지원금 수혜자(기업) 매월 사후 점검 및 관리



고용  
서비스  
연계



## 2. 신청 및 절차 관련 세부 내용

### 2-1. 지원금 신청

#### ① 신규 채용(취업)자 만근 후, 지원금 신청

항목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신청 주기	1개월 주기(총 3회)	2개월 주기(총 2회)
신청 시기	신규 채용자 1개월 만근 후 최초 신청	신규 취업자 2개월 만근 후 최초 신청

#### ② 한 사업장 단위 신청

-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신청해야 함.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지원금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 원칙적으로 최초 신청한 한 사업장에서만 신청 가능함, 최초 신청한 사업장에서 1회차 수급 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2차 신청을 한 경우 지원요건이 되더라도 지원 불가(예외. 11p 재참여 제한 참조)

#### ③ 만근 인정 범위\_채용장려금, 취업성공금 동일

- 매월 10일 이전 입사자는 입사 월부터 만근 인정이 되고, 10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부터 만근이 인정됨

예시 : 3월 5일 입사 ~ 4월 4일 근무 - 4월부터 만근 인정

3월 15일 입사 ~ 4월 14일 근무 - 5월부터(5월 1일 ~ 5월 31일) 만근 인정

23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경남 기업 채용 장려금	3.5. 입사	3.5~4.4 1차 만근	4.5~5.4 2차 만근	5.5~6.4 3차 만근				
			4.1~4.7 1차 신청	5.1~5.5 2차 신청	6.1~6.7 3차 신청			
	3.5~9.4 고용유지 의무(6개월 간)							
	3.15. 입사	4.1~4.30 1차 만근	5.1~5.31 2차 만근	6.1~6.30 3차 만근				
		5.1~5.5 1차 신청	6.1~6.7 2차 신청	7.1~7.7 3차 신청				
3.15~9.14 고용유지 의무(6개월 간)								
경남 기업 취업 성공금	3.5. 입사	3.5~5.4 1차 만근(2달)		5.5~7.4 2차 만근(2달)				
				5.1~5.5 1차 신청		7.1~7.7 2차 신청		
	3.5~9.4 근속유지 의무(6개월 간)							
	3.15. 입사	4.1~5.31 1차 만근(2달)			6.1~7.31 2차 만근(2달)			
				6.1~6.7 1차 신청		8.1~7.7 2차 신청		
3.15~9.14 근속유지 의무(6개월 간)								

④ 일괄 신청\_채용장려금, 취업성공금 동일

- 입사 일자 기준 신청 일자가 늦은 경우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별로 2~3회차 일괄신청 가능

예시 : 채용장려금 : 3월 5일 입사 ~ 6월 4일 근무 - 6월 1~3차 일괄 신청 가능  
 취업성공금 : 3월 15일 입사 ~ 7월 31일 근무 - 8월 1~2차 일괄 신청 가능

23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경남 기업 채용 장려금	3.5. 입사	3.5~4.4 1차 만근	4.5~5.4 2차 만근	5.5~6.4 3차 만근				
					6.1~6.7 1~3차 일괄 신청			
		3.5~9.4 고용유지 의무(6개월 간)						
경남 기업 취업 성공금	3.15. 입사		4.1~5.31 1차 만근(2달)		6.1~7.31 2차 만근(2달)			
						8.1~7.7 1~2차 일괄 신청		
		3.15~9.14 근속유지 의무(6개월 간)						

- ※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매 회차 분할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 시점이 늦어 예산소진 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 일괄 신청의 경우에도 매월 10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만 입사한 월부터 만근 기준이 적용됨
- ※ 일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의 서류 전체를 제출해야 함 (입사 시~일괄신청 시 까지 출근부, 급여이체 확인증 등)
- ※ 일괄신청 후 잔여 달에 대해서는 1달씩 신청하여 지원 받아야 함 (채용장려금의 경우 1~2차 일괄 지급받은 경우 3차 신청은 익월에 신청)

⑤ 구비 서류 제출\_채용장려금, 취업성공금 동일

- ‘참조 1, 2’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월의 7일까지 제출
- ※ 서류제출 및 보완제출 마감일이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전의 평일 일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주말 및 법정공휴일은 불산입함)  
 예시) 서류제출 마감 기일 : 해당 달 7일(토요일) → 6일 금요일까지 제출
-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시 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여야 함

⑥ 서류 보완 및 반려\_채용장려금, 취업성공금 동일

-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신청마감 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2. 지원금 지급 판단기준

- 신청 월의 15일 지원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신청기업)의 지원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금의 지급 ‘적정’ 내지 ‘부적정’ 판단함

### 2-3. 심사위원회

- ① 개최사유 : 채용장려금과 취업성공금 지급 적격성 심사
- ② 심사주기 : 서류 신청(매월 7일) 후 서류 보완 완료(신청일로부터 5일)된 기업에 한 해 **매월 15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③ 심사방식 : 내·외부 전문가 3인에 의해 심사됨
- ④ 심사결과 : 심사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검토한 결과에 따름
  - ‘지급 적정’, ‘보완’, ‘지급 부적정’으로 검토결과가 판정됨
  - ‘보완’ 판정이 났을 때에는 소속기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즉시 제출 서류의 내용 보완 및 사실확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익월\*에 재심사함
  - \* 사업 마감 시기(23년 12월)나 지급시일이 급박한 경우 지적사항 등을 보완완료 시 지급검토함
  - 심사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검토한 결과에 따름
  - 심사위원 3인이 각기 다른 판정을 했을 시에는(1인 : ‘지급 적정’, 1인 : ‘보완’, 1인 : ‘지급 부적정’) ‘보완’으로 간주함

### 2-4. 지원금 지급

- ① 지급기한
  -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 결과통지서 송부\* 후 5일 이내 지원금 지급함
  - \* 단, 운영기관의 내부 사정이나 전산망 오류 등의 사유로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음
- ②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은 심사위원회 결과통지서 송부 후 5일 이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래의 계좌명의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함

지원금 유형	항목	신청계좌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개인사업자	대표자 통장사본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통장사본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통장사본
	부득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빙되는 가족일 경우에만 대리 수취 가능 - 타인명의 이체동의서(가족)+가족관계증명서+타인명의 계좌

※ 계좌는 환수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이체 가능한 ‘보통예금’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CMA, I.R.P, 정기(자유)예·적금,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이 된 계좌 등 출금제한이 있는 계좌로는 신청불가

## **VI. 지도 · 점검 및 위반 조치**

- 1. 지도 및 점검**
- 2. 대상자 고용(근속)유지 기간 중 퇴사 시 조치**
- 3. 부정수급 유형**
- 4.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VI 지도·점검 및 위반 조치

### 1. 지도 및 점검

- 1-1.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개월 고용(근속)유지 의무기간에 대한 사후확인을 실시함
- 1-2. 필요한 경우 대상자(대상기업)에게 근로자 명부, 임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 필요서류의 제출 및 대상자(사업장)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상자(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 2. 대상자 고용(근속)유지 의무 위반 시 조치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자발적 퇴사 및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지급 및 점검 중단	비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 환수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 환수	비자발적 퇴사 시 지급 및 점검 중단

※ 채용장려금 : 4대보험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취업성공금 : 이직확인서, 사직서 사본 등을 수취하여 확인

### 3. 부정수급 유형

- 2-1. 시행지침 상 사업자 결격사유, 근로자 결격사유,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2.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 4.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3-1. 부정하게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환수하고,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
- 3-2. 문서 위·변조의 처리
  -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형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
- 3-3. 부정수급자 반환명령에 대한 시효는 5년으로 함
- 3-4. 기타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처벌 및 제재에 관한 내용 적용



## 참조문서

**참조1.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항목**

**참조2.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항목**

**참조3. Q&A**



##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항목

항목	기 준	
	신규 신청(최초 신청 시)	계속 신청(2차, 3차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1」 ② 체크리스트「서식2」 ③ 기업정보 활용동의서「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⑤ 기업통장사본 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⑦ 고용·산재 보험 완납증명서 ⑧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⑨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⑩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⑪ 입사시 ~ 신청시 출근부 ⑫ 입사시 ~ 신청시 급여이체확인증 ※ ⑧ ~ ⑨ : 근로자 발급	①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1」 ② 출근부 ③ 급여이체확인증 ※ ② ~ ③ : 신청 시점 기준 해당(만근) 월의 서류를 제출 (ex. 23년 5월 1일 2차 신청 → 4월 만근 출근부, 4월 급여이체확인증 제출)
	• 추가(필요시 수취) :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주주명부 최신 분, 기타 지급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유의 사항	※ 통장사본 : 기업통장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통장사본) / 대표자 개인 통장사본은 안됨 ※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발급분에 한함 ※ 근로계약서 : 해당 근로자 재직 중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갱신한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급여이체 확인증 : 급여일이 20일 이후인 경우, 급여명세서를 선 제출한 후, 급여이체확인증은 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 제출	

## 「경남 기업 취업성공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항목

항목	기 준	
	신규 신청(최초 신청 시)	계속 신청(2차 신청 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업성공금 지급 신청서「서식4」</li> <li>② 체크리스트「서식5」</li> <li>③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li> <li>④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li> <li>⑤ 신청인 근로계약서 1부</li> <li>⑥ 입사시 ~ 신청시 급여이체확인증</li> <li>⑦ 통장사본(지급받을 본인명의통장) 1부</li> <li>⑧ 타인명의 지급동의서(필요시)「서식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업성공금 지급 신청서「서식4」</li> <li>② 급여이체확인증</li> </ul> <p>※ ② : 신청 시점 기준 해당(만근) 월의 서류를 제출 (ex. 23년 6월 1일 2차 신청 → 3~4월 급여이체 확인증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추가(필요시 수취)</b> : 타인명의 지급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li> <li>- 타인명의 지급동의서 :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는 경우,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스캔본 제출(대리 수령자 : 부 또는 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빙되는 가족의 경우에만 해당)</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발급분에 한함</li> <li>※ 근로계약서 :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근속 중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갱신한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li> <li>※ 급여이체 확인증 : 급여일이 20일 이후인 경우, 급여명세서를 선 제출한 후, 급여이체확인증은 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 제출</li> </ul>	

## &lt;신청 및 절차 관련 Q&amp;A&gt;

## Q1-1. 사업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 지원사업의 경우 연간사업('23년)이기 때문에 '22년도 채용과 취업에 대해선 적용이 되지 않고, '23년 1월 2일(1일 주말)부터 '23년 예산 마감 시까지 경남고용안정선제 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나 채용한 기업에 지원됩니다.

## Q1-2.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요?

A. 네, '23년도 중 예산 마감 시까지만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이 되신다면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용장려금과 취업성공금 만근 요건을 충족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시행지침 13, 14p 참조).  
매월 10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 월 이 아닌 입사 월의 다음 달부터 만근 기준이 적용됩니다.

## Q2.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① 현 시행지침 상 신청요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공고문상의 문의번호(☎ 055)289-1109)로 문의 후 신청요건이 되는지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유선상 신청요건 확인은 신청 가능 여부만을 판단하며 지급 여부 판단은 서류상 정확한 검토와 시스템 조회를 통한 중복수혜여부 확인 등 세부 검토 후 판단됩니다).  
③ 별지서식과 참조1(채용장려금), 2(취업성공금)의 증빙서류 제출항목 상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사전에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메일주소나 팩스번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④ 담당자의 서류 보완요청 시, 요청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여 ③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Q3. 지원금을 일괄 신청은 가능한가요?

-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신규 취업하여 1개월(채용장려금)/2개월(취업성공금) 만근 직후 바로 신청하여 분할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2. 참조1, 2의 「증빙서류 제출 항목」을 참조하셔서 최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2~3회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서류 순서에 맞추어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 Q4. 각종 서류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 A1. &lt;사업자등록증&gt;

- 관할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사업장명의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 → 발급

## A2.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vel.or.kr/>) 접속 → 사업장명의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발급

## A3. <4대보험 완납증명원>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장수포털(<https://si4n.nhis.or.kr>) 접속 → 사업장명의 로그인 → 제증명발급 →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청 → 발급

## A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접속 → 사업장명의 로그인 →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확인내역)신청/발급 → 증명서발급 → 신청서화면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신청 → 발급

## A5.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vel.or.kr/>) 접속 → 개인 → 일반근로자 로그인 → 고용 → (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체크 후 조회 → 발급

## A6. <주민등록등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 "발급"클릭 →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중 택1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신청정보 입력 → 주민등록상 주소 선택 (시도, 시군구 선택 必) → 발급형태 : "발급" 선택 → 수령 방법 : "온라인발급(제3자 제출)" → "민원신청하기" 클릭 →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문구와 함께 [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중 택1 → "서비스 신청내역"화면에서 '처리상태' : "처리완료" → "문서출력" 클릭 → "인쇄" 클릭 후 인쇄 :발급완료

## A7.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대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접속 → 상단 증명서 발급 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필수 정보입력(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 1 후 인증 → 1. 발급 대상자 / 2.증명서 종류 / 3.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일반증명서" 택 / 4.주민등록번호(뒷번호6자리)공개 여부 :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선택 / 5.수령방법 : "직접인쇄" / 6. 신청사유 : "국내기관제출"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인쇄창 팝업 → 인쇄 : 발급완료

---

## Q5. (채용장려금의 경우)대표자 개인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계좌,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

## Q6. (취업성공금의 경우)가족명의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할 시 담당자와 그 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상의한 후 별지의 ‘타인명의 지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타인명의 계좌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 Q7. 타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채용장려금의 경우 다른 채용장려금이나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취업성공금의 경우 정착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둘 중 하나의 지원금을 선택하셔야 하고, 이미 중복지급 받으셨다면 하나의 지원금은 환수처리 되며 상황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있으시다면 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즉시 (☎ 055)289-1109) 바랍니다.

### Q8. 지원금 2~3회차 접수를 실수로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정해진 기한 내(시행지침 2p)에 3회 이상 채용장려금 신청·보완 요청을 드렸는데도 채용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연락 불통이신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신청 예정이신 분은 그 기한 안에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사전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 <기업 관련 Q&A>

### Q9. 채용(취업)한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되,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지사명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와 지사 간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사의 사업장 주소지 또한 경상남도 내만 가능합니다. 필요시 추가사안에 대해 확인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Q10.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기간인 업체(에)에서 대상자(가)를 (취업)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미납상태인 업체의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기간 중인 업체는 대상이 되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중 고용·산재보험이 완납증명원에 신청시점 기준으로 징수유예 기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하고 난후 고용·산재 보험이 미납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한 해당 서류 최신 본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신규 (취업)채용 대상자 관련 Q&A>

### Q11.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가)를 신규 (취업)채용했을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A.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만 제외되고,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용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

---

**Q12. 사내이사 등 임원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장려금지급이 가능한가요?**

- A. 사내이사 등의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계약서 형식 : 임원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의 형태
  - 출퇴근시간 결정권 : 출퇴근시간의 회사의 감독권한이 있고 시간 미준수에 관하여 회사의 징계권한이 있는 경우
  - 조직표 혹은 직제표 : 직제상 직상 위에 대표이사나 총괄이사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성이 있는 이사나 부장이 없어야 함
  - 내부승진 이사의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정산하였다면 근로자성 부인(내부이사 승진 전에 대한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이 없어야 함)
  - 사내에 임원의 임명과 해촉 등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그에 근거하여 인사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근로자성 부인(임원의 임명과 해촉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야 함)
  - 법인에 지분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님(지분이 없어야 함)
  - 법인카드가 없거나 사용액이 월 5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법인등기부에 등재X
  - 법인차량 미제공

---

---

**Q13. 당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유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Q14. 각종 수당은 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A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휴일 임금(주휴일 제외), 이름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A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1개월 초과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으로 최저임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됩니다.
- A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됩니다.
- A4.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일정비율 산입한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월의 급여이체확인증과 함께 급여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Q15. 신규 채용(취업) 근로자 근무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 정규직으로 채용한(되어) 근로자를 1년 이하 계약직으로 변경한다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등 시행지침 상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조건으로 변경을 했을 시 이미 지급해드린 채용장려금은 환수하게 되고, 지급 전이라면 '부지급 통지' 처리가 됩니다.

**Q16.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만근 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A. 시용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교육이나 연수를 하는 수습기간과 다르게 근로자의 자질, 능력 등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정규 채용이라고 보기 힘들며, 해당 평가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채용했을 때부터 만근 일이 적용됨

ex) 시용기간 2023. 03. 01.~05. 31. / 정규직 채용(취업) 2023. 06. 01.~

→ 지원금 지급신청을 위한 만근 기준은 2022. 06. 01.부터 적용됨

→ 수습기간 : 2023. 03. 01. 정규직 채용(취업), 수습기간 3개월(2023. 03. 01.~05. 31.)